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생 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3. (생 략) <신 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3. (현행과 같음) <u>4. W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A클래스 수익증권 2. C클래스 수익증권 3. Ce클래스 수익증권 <신 설> ②~⑤ (생 략)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A클래스 수익증권 2. C클래스 수익증권 3. Ce클래스 수익증권 <u>4. W클래스 수익증권</u> ②~⑤ (현행과 같음)
제40조(보수) ①~② (생 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-----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	제40조(보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-----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W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7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

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~10. (생략) ②~⑤ (생략)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<u>판매회사</u>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⑦~⑩ (생략)	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~10. (현행과 같음) ②~⑤ (현행과 같음)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<u>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</u>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⑦~⑩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